

6.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中 改正法律 (案)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6-133號 1996. 4. 29

1. 개정이유

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공사시행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으로써 2000년 1 단계 개항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신공항건설사업범위에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·도로외에 항만시설의 건설을 포함시키는 등 사업범위를 조정함.
- 나.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변경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 승인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.

- 다.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입도록 등 부대공사에 대하여도 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.
- 마.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등 13개 법률에 대한 의제조항을 보완 또는 신설함.
- 바. 주요 공항시설(여객터미널, 관제탑 등)의 건축에 있어 그 특성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특수기술 및 특수장치를 이용하거나 건물의 구조형태상 소방, 방재, 대피시설등에 대한 관련법규정의 동등수준이상의 효과

가 있다고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.

- 사. 여객터미널등 복합적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공항시설의 경우 공사의 성질상·기술관리상 건축·전기·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공정에 대한 시공관리 및 하자책임등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품질확보를 도모함.
- 아.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소음방지 대책을 건설중인 수도권신공항에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에 조기 대처토록 함.
- 자.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건설자재 생산시설을 공사기간중에 한하여 현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- 차.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완공된 시설물

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준공 확인을 함으로써 개별법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법률(안)에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(참조: 신국제공항건설기획단장, 주소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, 전화: 504-9183~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신국제 공항건설기획단 개발과(504-9193~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장인혼을 현장에 한국혼을 세계에